

변경대비표

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효력발생일 : 2023년 1월 27일
3. 정정사유 :
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
 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(23.15% → 23.65%, 2등급 유지)
 -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내역 추가
 - 소득세법 개정사항(2023.01.01) 반영 (연금계좌 세액공제)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법 용어의 변경 (공통)	집합투자규약	신탁계약서
제2부. 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5. 운용전문 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10. 라. 이 집 합투자기구에 적합 한 투자자 유형	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 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23.15%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<신설>	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 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23.65%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<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>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신설>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2)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 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[표: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구성 및 직전 회 계기간 중 발생 내역(단위: 원)] (현행과 동일) - 상기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 으며,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
<p>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</p>	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<연금계좌세액공제>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 만원</u> 이내 세액 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 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 만원</u>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 세 포함)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 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 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 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p>	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<연금계좌세액공제>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 만원</u> 이내 세액 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 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 500 만원</u>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<u>600 만원</u>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 방소득세 포함) <삭제></p>
	<p>(5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 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만원</u> 이 내의 금액)과 연 <u>7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 제합니다.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 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 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 만원</u> 이 내의 금액)과 연 <u>7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 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 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300 만원</u> 이내 의 금액)과 연 <u>7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<u>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u> (이하 생략)</p>	<p>(5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 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만원</u> 이 내의 금액)과 연 <u>9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 제합니다.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 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 500 만원</u>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 만 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<삭제>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4부. 1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
변경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효력발생일 : 2023 년 1 월 27 일
3. 정정사유 :
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운용현황 및 운용실적 갱신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